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4
----------	-----

제출년월일 : 1995. 5. 23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하천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유재산법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점용료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물을 절약하는 풍토조성에 기여코자 함

□ 주요골자

1. 하천부지 점용료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방법의 개선
 -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 공시지가로 기준
 - 적용요율을 현행의 1/2로 낮추어 조정
(5/100 → 2.5/100등)
2. 공업용수 인수에 따른 부과기준 개선
 - 환경에 따라 월정액 → 사용량(허가량) 기준
 - 하천수 사용료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원수대를 적용
(ϕ 25m/m 월 5,000원 → m³/sec 당 7.13원)
3. 일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
 - 전기사업용수 (m³/sec당 연액 100,000원 → 200,000원)
 -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 → 현행의 2배로 조정
4. 점용료 과다증가에 따른 조정근거마련
 - 점용료가 과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산식에 의하여 조정 (30%증가시→14%조정, 100%증가시→19%조정)
5. 면적 및 기간 산정방법 개선
 - 1.0m²미만은 반올림 → 계산하지 않음
 - 15일 이하는 1/2월, 15일 이상은 1월 → 매1일을 1/365일로

□ 근거법령

1. 하천법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의2
2. 공유수면관리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12조

□ 기타참고자료 별첨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하천법제33조제3항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제2항중 '점용료등의' 다음에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을 삽입하고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6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시장·군수·증평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1)의 점용료등산정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 4호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15조및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p>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p>	<p>·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p>
<p>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p>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p> <p>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p>

구 분	산 정 기 준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부속물의 점용	·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m^3/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 (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0.5 m^3/sec 까지 연액10,000원 0.5 m^3/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 (차량도선은 배액) 갑 지 : 월액 20,000원 을 지 : 월액 10,000원 병 지 : 월액 6,000원 ※5톤초과 여객선은 5톤증가시마다 5톤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이하 유선 <table border="1" data-bbox="565 1511 1170 1746"> <thead> <tr> <th>지역등급</th> <th>동 력 선</th> <th>무 동 력 선</th> </tr> </thead> <tbody> <tr> <td>갑 지</td> <td>월 100,000원</td> <td>월 50,000 원</td> </tr> <tr> <td>을 지</td> <td>월 60,000원</td> <td>월 30,000 원</td> </tr> <tr> <td>병 지</td> <td>월 20,000원</td> <td>월 10,000 원</td> </tr> </tbody> </table>	지역등급	동 력 선	무 동 력 선	갑 지	월 100,000원	월 50,000 원	을 지	월 60,000원	월 30,000 원	병 지	월 20,000원	월 10,000 원
지역등급	동 력 선	무 동 력 선											
갑 지	월 100,000원	월 50,000 원											
을 지	월 60,000원	월 30,000 원											
병 지	월 20,000원	월 10,000 원											

구 분	산 정 기 준										
	<p>※5톤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p> <p>(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 수송선</p> <table border="0"> <tr> <td>50톤이하</td> <td>월액 40,000원</td> </tr> <tr> <td>50톤초과-100톤</td> <td>월액 50,000원</td> </tr> <tr> <td>100톤초과-200톤</td> <td>월액 70,000원</td> </tr> <tr> <td>200톤초과-300톤</td> <td>월액 90,000원</td> </tr> <tr> <td>300톤초과-400톤</td> <td>월액 110,000원</td> </tr> </table> <p>400톤 초과시는 100톤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p> <p>(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p>	50톤이하	월액 40,000원	50톤초과-100톤	월액 50,000원	100톤초과-200톤	월액 70,000원	200톤초과-300톤	월액 90,000원	300톤초과-400톤	월액 110,000원
50톤이하	월액 40,000원										
50톤초과-100톤	월액 50,000원										
100톤초과-200톤	월액 70,000원										
200톤초과-300톤	월액 90,000원										
300톤초과-400톤	월액 110,000원										
5. 지하의 유수 채취	·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 (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나목의 1/3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하천법제2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담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나목의 1/4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구 분	산 정 기 준
7. 토석.사력의 채취	<p>가. 당해년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p> <p>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p> <p>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p>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	. 토지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위한 점용 또는 사용 (공유수면에 한함)	.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의 5/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50/10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2.5/100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3조의2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x {10/100 + (증가율 - 10/100) x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x {13/100 + (증가율 - 20/100) x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x {16/100 + (증가율 - 50/100) x 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x {19/100 + (증가율 - 100/100) x 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x {22/100 + (증가율 - 200/100) x 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x 0.25】